

#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Japan's Basic Disability Pension: Status and Implications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1.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장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구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아 직업생활의 유지가 힘든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이 더욱 절실한 삶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의 하나로 경제, 교육,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 등 여러 생활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2005년 조사 결과에 비해 24만 7천 원 향상된 수치이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는 54.0%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게다가 동 조사에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9.1%로 3년 전 16.6%보다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7년 12월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2%에 비해 6배 정도 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활동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써 국민연금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이러한 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권은 소득활동자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장애인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인은 연금의 가입할 기회조차 없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중점적인 추진 과제의 하나로써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의 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추가 지출비용 때문에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보장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장애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장애가 있는 사람

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액의 경감을 위한 각종 장애관련 수당제도<sup>1)</sup>, 장애기초연금제도, 장애후생(공제)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61년에 전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되어 전 국민이 몇 개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 및 공무원 대상의 기초연금 위의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른바 2층구조체제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그림 1 참고). 이를 통해서 피보험자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선천적인 장애 포함)에 대해서도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장애가 있는 성인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금은 선천적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민연금 중 장애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1) 일본의 추가비용 보전 목적의 장애수당으로는 특별장애자수당, 장애아복지수당, 복지수당(경과조치분),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있다.  
 • 특별장애자수당: 1~2급 정신 또는 신체의 중도(重度)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시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20세 이상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6,440엔(2008년 기준) 지급  
 • 장애아복지수당: 1~2급 정신 또는 신체의 중도(重度)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시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20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14,380엔(2008년 기준) 지급  
 • 복지수당(경과조치분): 20세 이상의 종래의 복지수당 지급자격자 중에 특별장애자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장애기초연금도 지급받지 않는 1~2급의 중도(重度)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4,480엔(2008년 기준) 지급  
 • 특별아동부양수당: 20세 미만으로 정신 또는 신체에 중정도(中程度)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으로 감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1급은 월 50,750엔, 2급은 월 33,800엔(2008년 기준)

장애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장애기초연금의 개략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 장애연금제도의 역사

1944년(쇼와 19년)에 제정된 후생연금보험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1·2급의 장애연금이 설치되어 있었다. 1954년(쇼와 29년)의 법개정에서는 3급이 신설되었다. 또 정신장애도 제도 초기부터 장애연금의 대상이었다.

1959년(쇼와 34년)에 창설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각출을 연금 지급의 조건으로 한 「보험

주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개념도 많이 반영되어 보험료를 각출한 사람들에게 장애연금과 20세 전에 초진일(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는 사람이나 제도가 발족한 1961년(쇼와 36) 4월 1일 전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복지연금」의 2층 구조이다.

후자의 「장애복지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은 전액 국고 부담이 되고 있었다. 무각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득 제한이 있어 연금액도 낮아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면에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발족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신장애는 1964년(쇼와 39년) 8월 1일부터, 정신박약은 1965년(쇼와 40년) 8월 1일부터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었다.

1966년(쇼와 41년) 12월 1일부터는 내부장애 중에서도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간장병이나 신장병도 대상에 포함되어 모든 질병이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무각출제의 「장애복지연금」에 2급이 창설된 것은 1974년(쇼와 49년) 3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정신장애나 정신박약 장애인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 이후부터이다.

1986년(쇼와 61년) 4월 1일의 법개정으로 장애연금도 노령연금과 같이 2층 구조의 연금제도가 되었다. 즉 1층 부분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그 위에 2층 부분으로서 피고용자 연금(후생연금보험/공제 조합)으로부터 장애후생연금이나 장애공제연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이 당시 법개정의 주된 목적은 제도간의 장애등급표 통일 및 무각출 연금을 각출 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끌어올려 장애인 간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액 국고 부담이었던 무각출 연금의 「장애복지연금」은 각출연금의 연금과 명칭 및 연금액 등에서 장애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원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부터 제1호 피보험자나 제2호 피보험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의 부담도 포함되어 사회보장제도 재원 부담의 본래의 자세는 퇴색해 버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이거나 초진일에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은 정액의 장애기초연금을 받는다.

초진일에 있어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장애기초연금에 보수 비례의 장애후생연금이나 장애공제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1986년(쇼와 61년)의 법개정에서는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이종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용자연금 가입 중에 초진이어도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장애기초연금은 1·2급만 해당되지만 장애후생연금이나 장애공제연금에서는 3급까지 해당되어 보다 경증의 장애인이 장애수당금을 받게 된다. 단, 장애수당금은 장애상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2005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자 155만명 중 약 0.8%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그 중심이 무각출(비기여) 연금의 수급자이다.

2) 장애기초연금제도 소개

(1) 장애기초연금의 목적 및 대상자

장애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의 하나로 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또는 20세 전에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정하는 장애등급표(표 1 참고)에서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특히 20세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림 1. 일본 장애연금의 개요(2008년)

배우자 가급연금 18,992엔	배우자 가급연금 (1급과 동일)	
장애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2급)×1.25]	장애후생연금 ① 총보수제도입전의 피보험자기간분+ ② 총보수제도입이후의 피보험자기간분 ① 평균표준 $\frac{7.5}{1000} \times$ 피보험자 (2003년 3월까지) 보수액 $\times$ 기간의 월수 $\times 0.998$ ② 평균표준 $\frac{5,769}{1000} \times$ 피보험자 (2003년 4월이후) 보수액 $\times$ 기간의 월수 $\times 0.998$	
자녀 가산액 [첫째, 둘째자녀: 18,992엔 셋째 이상: 6,325엔]	자녀 가산액 (1급과 동일)	
장애기초연금 66,008엔×1.25	장애기초연금 66,008엔	장애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2급)과 동일 단, 최저보상액은 49,517엔]
<1급>	<2급>	<3급>

자료: 内閣府, 『障害者白書』, 2008년

- 20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20세가 되기 전에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20세 이후에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
- 장애기초연금은 노령기초연금과 같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젊은

표 1. 장애기초연금의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1	양쪽 눈의 시력의 합이 0.04 이하인 자
		2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100 데시벨 이상인 자
		3	양쪽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4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자
		5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6	양쪽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7	양쪽 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자
		8	체간의 기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자
		9	전 각 호 이외,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의 용무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
		10	정신장애이며,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인 자
		11	신체 기능의 장애 혹은 병상 또는 정신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인 자
	2급	1	양쪽 눈의 시력의 합이 0.05이상 0.08 이하인 자
		2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90 데시벨 이상인 자
		3	평행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4	저작의 기능이 부족한 자
		5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6	양쪽 상지의 이완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가 부족한 자
7	양쪽 상지의 이완 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중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8	한쪽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9	한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자		
10	한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11	양쪽 하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자		
12	한쪽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자		
13	한쪽 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자		
14	체간의 기능하러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자		
15	전 각 호 이외,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이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 받는 자		
16	정신장애이며,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인 자		
17	신체 기능의 장애 혹은 병상 또는 정신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전 각 호와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인 자		

자료: 川村匡由·米山岳廣, 「障害者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 2005.

사람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

(2) 수급자격(장애) 인정시기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은 의사로부터 처음 진료를 받은 날(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그 사이에 증상이 고정된 날)에 장애상태에 있는지 또는 65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일에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1966년(쇼와 41년) 법개정에서 이른바 「사후 중증의 장애연금」이 설치되었다. 즉 사후 중증은 장애 인정일에 있어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정일로부터 65세 이전에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65세까지 청구를 실시하면 장애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다.

(3) 신청시기

장애기초연금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시기는 의사로부터 처음 상병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확정 진단을 받은 날 이후에 가능하다.

(4) 지급요건

장애기초연금의 지급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20세 이후에 초진일이 있는 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여 수급자를 말하며, 다음의 ①~③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 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초진일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이다. 단,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본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입이 종료된 후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다(다른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제외함).
- ② 장애 인정일(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증상이 고정된 날)에 국민연금 장애등급표상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인 경우
- ③ 다음 몇 개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함.
  - 초진일이 있는 달의 전전 월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면제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이 피보험자 기간의 2/3이상 있어야 함.
  - 2016년(헤세이 28년) 3월 31일까지 초진일이 있는 경우는 초진일의 전전 월까지의 최근 1년간에 보험료의 체납이 없어야 함.

앞서 수급자격(장애) 인정시기에서 살펴봤듯이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2급 이상이 되었을 경우 사후 중증의 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에 의한 지급 제한은 없다.

둘째,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즉 20세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선천적 장애인 포함)으로서 일반적으로 비기여 수급자를

말하며, 다음의 지급요건이 필요하다.

- ① 20세가 되었을 때에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상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때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20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됨.
- ② 장애 인정일이 20세 이후일 때는 장애 인정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됨.
- ③ 본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액이 반액 혹은 전액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이후 다시 설명).
- ④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2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후 중증의 청구를 할 수 있음.

(5) 연간 연금액(2009년 기준)

장애기초연금의 연금액은 정액으로 1년에 6회(짝수달) 지급하며 2급의 장애에 대해서는 년 792,100엔(월액 66,008엔)을 지급하고, 1급의

장애에 대해서는 2급의 장애의 연금액의 1.25배 금액인 년 990,100엔(월액 82,508엔)을 지급한다(표 2 참고).

또한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가구원 중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1급 혹은 2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인원수에 따른 가산액이 있다. 즉 자녀 한 명에 대해 227,900엔(월액 18,992엔)을 두 명일 때는 455,800엔(월액 37,983엔)을 3명 짜부터는 455,800엔에 한 명 늘어날 때 마다 75,900엔(월액 6,325엔)을 더한 금액이 가산된다.

**예시)** 자녀가 2명 있는 자가 장애기초연금(1급)의 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 1급의 장애 : 990,100엔
- 자녀 가산 : 227,900엔 × 2명 = 455,800엔

**【합계】** 144만 5,900엔의 연금을 수취할 수 있음.

표 2. 일본의 연금 및 수당 추이(월액)

구분		1999~2003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장애기초연금	1급	83,775	83,025	82,758	82,758	82,508	82,508	82,508
	2급	67,017	66,417	66,208	66,208	66,008	66,008	66,008
특별아동부양수당	1급	51,550	51,100	50,900	50,900	50,750	50,750	50,750
	2급	34,330	34,030	33,900	33,900	33,800	33,800	33,800
특별장애지수당	-	26,860	26,620	26,520	26,520	26,440	26,440	26,440
장애아복지수당	-	14,610	14,480	14,430	14,430	14,380	14,380	14,380
특별장애급부금	1급				50,000	50,000	49,850	50,000
	2급				40,000	40,000	39,880	40,000

자료: 内閣府, 「障害者白書」, 2008년.

(6) 지급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초진일이 있는 병이나 부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등급표(1급·2급)에 의한 장애상태에 있는 동안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된다.

(7) 장애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제한

20세 전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장애와 관련되는 장애기초연금은 본인의 보험료 납부에 근거하지 않는 무각출(비기여)의 연금 급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근거하는 소득제한이 설치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정한 연 수입을 초과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4년(헤세이 6년) 법 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려하여 연 수입 398.4만엔(2인 세대)을 초과해도 연수입 500.1만엔(2인 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1/2 상당액에 한해서 정지하고, 500.1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2단계 체제로 바뀌었다(그림 2 참고).

(8) 기타 연금지급 정지 및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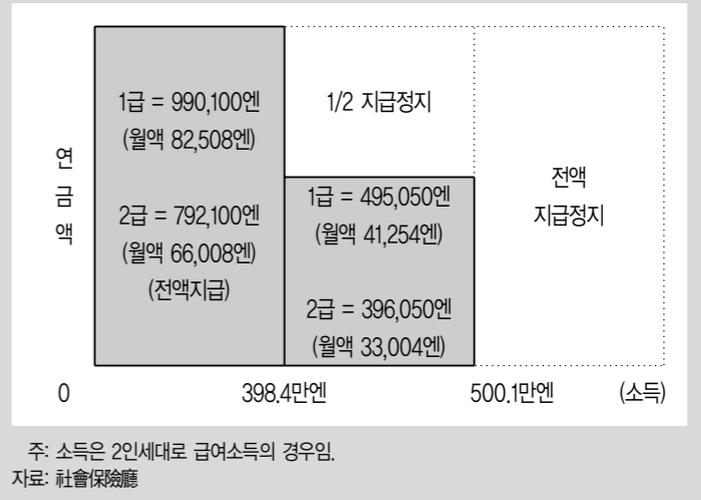
장애기초연금은 소득제한으로 인한 지급 정지 외에 장애상태에 따른 지급

정지가 있다. 즉 1급 또는 2급의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2급의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연금의 지급은 정지된다. 이 때 2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고 지급 정지 후에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 정지는 해제되어 그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기초연금의 지급이 재개된다.

그리고 지급 정지되고 있는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새로운 병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병의 장애 인정일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장애와 새로운 질병의 정도를 합하여 장애정도가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정지는 해제되어 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증상이 호전되어 후생연금보험 3급의 장애상태에도 해당

그림 2. 장애연금수급자의 소득제한



주: 소득은 2인세대로 급여소득의 경우임. 자료: 社會保險廳

하지 않게 되고, 3년이란 시간이 경과했을 때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또 하나의 원칙으로서 일본 국민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같은 급부사유로 동일한 제도로부터 2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으면 65세부터는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되어 그 시점부터 장애기초연금은 지급이 정지된다.

### 3. 결론 및 시사점

본 고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대략적인 개황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일본에서는 1961년에 국민연금이 제도화되어 전국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피보험자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것 외에, 국민연금 가입 연령인 20세 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선천적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연령 20세 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여 없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장애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

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 적용대상자가 도시자영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전국국민연금제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 가입연령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속한 장애인들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천적 장애인 및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면, 장애인 개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제도의 목적면에서 현재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장애수당이 월 최대 13만원 지급되어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보전이 절실하다. 따라서 장애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추가비용 보전 목적의 장애수당을 남겨두고 별도의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의 재원조달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하려고 하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대상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이 될 것이므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조세방식의 연금제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처럼 조세의 의한 기초연금(소득제한 필요)과 소득비례에 의한 연

금을 수급할 수 있는 2층 구조의 연금제도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대상자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판정은 의학적 손상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의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향후 도입 예정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